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개선방안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목 차

I. 들어가며

II. 현행법상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1.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와 반부패정책
2. 현행법의 공직자윤리제도와 이해충돌의 방지
 - (1) 공직자윤리법
 - (2) 부정청탁금지법
 -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4) 국회법

III. 국회의원의 지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

IV.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1. 20대 국회 발의안
2. 주요 내용

V. 결론

I. 들어가며

- 공직자 이해충돌 또는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라 함은 공직자가 수행해야 할 공적 의무가 개인의 사적 이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
- 공직자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사적 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개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
- 특히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의 문제는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국민적 관심사임.
- 최근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사전예방과 사후대응 모두 공백이 있음.
- 그러나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지금까지 전혀 법제화되지 못했던 것은 아니고 겸직금지, 주식신탁, 퇴직자취업제한 등 다양하게 시행되어 왔음(광의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또는 소극형 이해충돌방지제도).
- 다만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금지’, 즉 사익추구형 이해충돌 부분이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법제화되지 못하였음(협의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또는 적극형 이해충돌방지제도).
- 그렇다면 공익과 사익의 충돌상황에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을 우선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공익의 우선을 위해서 제한해야 할 제도를 포괄하는 광의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또는 소극형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법적 공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진 사익추구형 이해충돌을 적극적인 이해충돌방지제도로서 새롭게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
- 오늘 발제는 먼저 현행법상 시행되고 있는 광의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전반을 개관하고,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에 그 지위와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바람직한 이해충돌방지제도 개선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20대 국회에 발의된 여러 법률안을 개관함으로써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을 시작하는데 의미를 둠.

II. 현행법상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1.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와 반부패정책

○이해충돌 방지에 있어서 핵심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

○OECD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 제시, 제도 마련을 권고 및 각국 이행상황 관리.

○이해충돌이 적절히 관리되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정책 결정의 합법성, 공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공무원의 준수의식이 약화되고, 법의 지배, 정책의 개발과 적용, 시장의 기능 및 공공 자원의 분배가 왜곡됨으로써, 민주적인 정부의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 지적.

○이해충돌의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사전에 이해충돌의 상황을 방지하거나 해소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이해충돌의 상황 그 자체가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해충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패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한편 고위공직자의 경우 이해충돌상황의 방치 그 자체로서 공직자의 부패로 인식되기도 함.

○사회 각 분야에서의 이해충돌의 방지 또는 제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과제로서 반부패정책 중 사전조치적 성격을 띤.

2. 현행법의 공직자윤리제도와 이해충돌의 방지

○헌법 제43조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

○헌법 제46조 국회의원 청렴의무, 국가이익우선의무, 지위 남용한 본인 또

는 제3자 권리 등취득 금지.1)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헌법상 의무인 청렴의무, 공정성의무, 비밀유지의무, 겸직금지의무를 원칙적으로 규정, 이해충돌방지의 취지는 있으나 이해충돌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소극적인 기능에 그침.

○공직자윤리법은 제1조 목적조항에서부터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라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보다 상세히 제도화하였으나 소극적 제도에 그침.

○헌법 46조는 청렴의무와 지위남용한 이익취득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법적 공백상황임.

(1)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공직자윤리법 제1조 목적2)).

○국회의원도 당연히 적용됨

○공직자재산등록, 직무관련 주식매각, 주식백지신탁, 퇴직자취업제한 등이 있음.

○공직자 재산등록 : 일정한 직위 이상의 공직자로 하여금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변동사항을 신고하고,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공개됨. 과거의 재산 형성 감시, 미래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하는 방법으로 이해충돌방지 기능있음(1981년도입).

○주식 백지신탁 : 일정한 직위 이상의 공직자가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그 주식

1)헌법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2) 공직자윤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 관리·운용·처분 권한 일체를 수탁기관에 위임하여 자신의 재산이 어떠한 형태로 존속하는지 알 수 없도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2005년 도입).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 일정한 직위 이상에 재직하였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1981년 도입)

○적극적인 이해충돌방지 관련하여서는 제도로서 도입한 것이 아니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제2항, 제3항 공직자의 의무로서만 규정하는 것에 머물러 있음.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해충돌 판단 기준, 공직자가 취해야 할 의무, 그 외 위반한 경우 사후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못함.

○따라서 현행법에 규정된 이해충돌 방지 제도는 소극적인 방식의 이해충돌 회피에 국한되고 적극적인 이해충돌방지제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됨.

(2) 부정청탁금지법

○지난 2013년에 정부가 제안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는 적극적 형태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이 제외되어 입법됨.

○위 법률안은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의 경우에도 징계(안 제30조), 형벌(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경우, 안 제31조 제2항 제4호), 과태료(그 밖의 경우, 안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제8호, 제2항 제2호에서 제5호, 제3항 제2호)를 공직자에게 부과가능.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2013. 8. 5. 정부제출)3)

제4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제5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주요내용요약)

제11조(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가 제척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가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제12조(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고위공직자가 임용되거나 취임한 때에는 임용 또는 취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임용 또는 취임 전 이해관계가 있던 고객 등과는 2년간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

제13조(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제14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제15조(가족 채용 제한)

제16조(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한)

제17조(예산의 부정사용 금지)

제18조(공공기관의 물품과 직위 등의 사적사용 금지)

제19조(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제20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21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제26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가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하며,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
권익위법)⁴⁾

○최근 검찰은 어느 국회의원이 도심재생사업지역에 친족 및 이해관계인 등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부패방지법상 ‘업무상비밀이용죄’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로 기소하였음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실효적인 부패방지업무를 위하여 ‘업무상 비밀누설’뿐만 아니라 ‘업무상 비밀이용’도 형사처벌조항 둠. 제정 당시에는 부패방지업무 중 알게된 비밀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9년 공직자의 일반적인 업무로 확대함.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구성요건 엄격함. ‘업무성’, ‘비밀성’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위 사건도 ‘비밀성’ 또는 ‘미공개정보’여부에 대하여 첨예한 법정 다툼이 예정되어 있고 검사의 입증책임부담으로 인해 유무죄 확신하기 어려움.

○구성요건을 형법상의 업무상비밀누설과 같이 엄격하게 볼 경우에 부패방지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비판이 있으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구성요건 엄격히 보는 것은 법의 일반원칙임.

3)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D1U3Z0J8Q0N5U1K5T5M4T5R2K0E3U1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통해서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또는 국회법의 형태로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구체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더욱 의미있다고 생각됨.

○부패방지법상의 업무상비밀이용죄의 판례는 아직 축적되지 않음.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판례가 아직 없고 지방의원의 경우에 판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함.

2006. 12. 8 선고 2006도6410 판결 [부패방지법위반] [공2007.1.15.(266),167]
(2심 창원지방법원 2006. 9. 7 선고 2005노2061 판결, 1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05. 10. 11 선고 2005고단836 판결)

(피고인주장)

(1)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본건 당시 구 지방자치법(2005. 8. 4. 법률 제7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가 정한 의정활동비, 여비만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뿐 정기적인 급여나 보수를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부패방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산청군 건설과 (직위명 생략) 공소의 1로부터 국가하천 남강변 만곡부인 경남 산청군 (상세지번 및 면적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유수소통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이 재배정되었고 이에 따라 산청군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보상을 실시할 것이라는 점을 보고받았고 이를 다시 (직위명 생략) 공소의 2에게 재확인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산청군의회 회기 내에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거나 확인한 것은 아니고 다분히 사적인 위치에서 피고인의 지역구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업무처리중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산청군이 수해방지를 위한 유수소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은 산청군의 숙원사업으로서 과거 수년간 수시로 거론되어 왔던 부분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이 실시된다는 소문이 있어 온 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공소의 3도 이러한 소문을 듣고 피고인에게 먼저 그 사실여부를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한 점, 이 사건 토지는 유수소통개선사업이 시행될 지역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투기행위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청군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받

아 곧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이 실시될 것이라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법원의 판단)

(중략)(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정보가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산청군의회으로서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인지 여부

(가)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피고인이 산청군의회로서 '업무처리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정보를 알게 된 것인지 그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는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업무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부패방지법 제1조, 제2조에 따르면 위 법의 제정목적은 부패행위, 즉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입법목적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한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라는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므로,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 역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와 동일하게 공직자가 법령상 관장하는 업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업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직자의 업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직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산청군의회로서 지방자치법상 산청군의회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의결과 안건의 심사처리에 있어서 발의권, 질문권, 토론권, 표결권을 가지며 의회가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사에서 직접 감사 및 조사를 담당한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과 당심증인 공소외 1의 당심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토지는 국가하천인 남강변 만곡부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집중호우시마다 남강의 유수소통을 저해하여 피고인의 지역구인 산청군 오부면의 농경지와 주택을 상습적으로 침수시키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산청군 오부면민들은 산청군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여 왔었고, 2002. 9. 초순경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산청군 오부면이 수해를 입자 2002. 10.경 다시 산청군에게 이 사건 토지를 하천으로 편입시켜 우수소통을 원활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2. 10. 16. 실시된 산청군의회 산청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산청군 (직위명 생략) 공소외 2에게 당시 자신의 지역구 현안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우수소통개선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공소외 2로부터 산청군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태풍 루사로 말미암은 피해복구 및 상습침수지역 우수소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몇몇 우수소통을 저해하는 토지들의 하천편입, 보상을 위한 예산을 신청하였는데 수해복구에 필요한 예산만을 배정받고 나머지 우수소통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우수소통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태이나 현재 이에 대한 예산을 재배정받기 위해 노력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③ 그 때부터 피고인은 수시로 공소외 2와 산청군 건설과 (직위명 생략)인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천편입, 보상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었는지 여부를 문의하기 시작하였다.

④ 산청군의 예산확보노력으로 말미암아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은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하천관리과는 2002. 11.경 산청군 건설과에 앞서 누락, 삭감되었던 산청군 상습침수지역 우수소통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재배정하겠다고 전화로 통보하였다.

⑤ 그 무렵 피고인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공소외 1을 찾아가 이 사건 토지의 하천편입, 보상을 위한 예산배정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하천편입, 보상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정보를 들었고, 다시 이를 공소외 2에게 재확인하였다. 당시 공소외 1,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알려준 이유는 피고인이 산청군 오부면을 지역구로 하는 군의원으로서 오부면 주민들의 현안사항에 관하여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산청군의회 내에서 회기 중 의안을 결의하거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과정이 아니라 회기 외에서 개별적으로 산청군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우수소통개선사업을 위한 예산배정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하천편입을 위한 예산이 재배정되어 보상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보를 알게 된 것이어서 지방자치법상 부여받은 업무 그 자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정보를 알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지역구가 산청군 오부면이고 이 사건 토지를 하천에 편입시켜 우수소통을 원활히 하는 사업의 시행여부는 당시 오부면의 지역현안이었던 점, 피고인이 산청군의회 회기 중 산청군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2로부터 산청군이 일차적으로 누락된 이 사건 토지의 우수소통개선사업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재배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선상에서 개별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하천편입, 보상을 위한 예산배정여부를 문의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공소외 1, 공소외 2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하천편입으로 말미암은 수혜지역이 될 ○○군 ○○면주민들을 대표하는 산청군의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건설교통부로부터 당초 누락된 이 사건 토지의 우수소통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을 재배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천편입을 위한 예산 배정여부를 문의한 행위는 피고인이 산청군의원으로서 관장하는 산청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권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형식적으로 지역구 현안사업의 추진경과에 관한 문의라는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고 실질적으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산청군의원으로서 '업무처리중' 이 사건 토지의 하천편입을 위한 예산배정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알게 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정보가 '비밀'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를 하천으로 편입하는 방식의 우수소통개선사업은 이 사건 토지로 말미암아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산청군 오부면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기는 하나 2002. 11. 경 전까지는 위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여부는 위 사업의 착수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였던 점, ② 공소외 1, 공소외 2는 2002. 11.경 건설교통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하천편입, 보상을 위한 예산이 재배정되었다는 사실을 정식공문으로 통보받기 전에 미리 전화로 통보받은 후 그 무렵 이를 문의하는 피고인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건설교통부로부터 정식공문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하천편입, 보상에 필요한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사실이 통지된 시기는 2002. 12. 18.이었고 그 때부터 토지조서의 작성, 토지분할, 보상금 산정을 위한 토지시가감정 등 이 사건 토지의 하천편입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에 착수한 점, ③ 통상 사유지의 하천편입에 따른 보상금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서 결정되므로 산청군이 예산을 확보하여 이 사건 토지의 하천편입에 따른 보상절차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보가 미리 알려질 경우 보상이익을 노리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투기가 성행하여 보상금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감정가액이 높게 형성되어 당초 예상한 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가능성이 있는 등 하천편입절차상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산청군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가지게 되는 점, ④ 피고인의 주선으로 공소외 4와 공소외 3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맺어진 시기는 2002. 12. 17.로서 아직 산청군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하천편입,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재배정되었다는 정식공문을 받기 전이었고,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였던 공소외 4는 검찰조사과정에서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결과적으로 공소외 3은 2002. 12. 17. 아들인 공소외 5 명의로 공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75,000,000원에 매수한 후 2003. 7. 23. 보상금 260,059,000원을 받고 산청군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함으로써 말미암아 85,059,000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청군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받아 곧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이 실시될 것이라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비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국회법

○국회법 제29조와 제29조의 2에서 겸직금지, 영리행위금지 규정함.⁵⁾ 제

5)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2.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3.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55조에 의하여 징계사유가 됨⁶⁾).

○그러나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거나 도모한 경우에 대한 적극적 의미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이 국회법에도 존재하지 아니함.

○국회규칙으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국회의원윤리강령 있을 뿐임.

Ⅲ. 국회의원의 지위와 이해충돌방지제도

○부정청탁금지과 달리 이해충돌방지는 구체적인 담당직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할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나 적용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무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함.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지만 지역 대표성이 인정되고 지역의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 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실비 변상은 받을 수 있다.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6)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 수행함.

○비례대표 의원도 특정 직능분야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관련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특정 단체 또는 분야와 연관된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정당원으로서 국회의원의 지위 : 정당은 소속 국회의원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회의원은 정당 또는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하여 활동함.

○국회의원은 그 헌법상의 의무와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일반 공직자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복잡한 이익 충돌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사익, 집단적 이익, 공익, 국익 등의 구별이 어려움.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의 경우 업무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임기 안에서도 유동적이며, 게다가 특정 직능분야를 대표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경우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013년 정부제출법안이었던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에도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직무수행 금지는 주로 처분적 행위 또는 집행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함.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같은 공직자의 입법업무는 입법의 예비활동으로서 상시적 감시와 견제기능이 대체적이므로, 2013년 정부법률안처럼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에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적용가능한지 검토되어야 함.

○상임위원회 업무의 경우, 제척, 기피, 회피 등으로 인한 위원회 구성과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현재와 같은 극단적인 대치적인 국회에서 과연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검토되어야 함.

○더욱이 국회의원 개인이 가지는 헌법상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제한은 엄격하게 비교형량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음.

○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에 대하여 다른 공직자와는 달리 국회법 및 국감국조법 등을 통해서 이해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 범위, 내용, 위헌성 여부 등이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와 헌법상 지위와 함께 연구되어야 함.

○그러나 이와 같은 종류의 제도는 대규모 부패스캔들이 발생한 다음에 국민적 요구로 제정되는 경우가 많은 바,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충돌의 상황에 대한 법적 통제는 더 늦기 전에 입법을 완성해야 할 것.

IV.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1. 20대 국회 발의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이해충돌방지와 제거는 행정부나 집행기관과는 다르므로 그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함.

○최근 이슈가 된 복수의 국회의원들의 사적 이익 도모(7)8)에 대해서 기존 법률들의 공백이 확인되자 이해충돌방지관련법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제재를 강화하자는 법률안이 속속 발의되었음.

<표_1> 20대 국회 이해충돌 방지 법안 발의 현황

의안명	대표발의	주요 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6. 8. 1.발의	안철수	*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금지 등 이해충돌방지 근거를 마련.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8.4.3	권은희	*공직자등의 가족이나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단체 등을 “사적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사적 이해관계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를 통해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부당 이득을 줄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

7) 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기소(연합뉴스 2019. 6. 18. 보도)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618005500038/?did=1825m>

8) “손혜원 이어 한국당 장제원·송언석도 ‘이해충돌’ 논란”(KBS 2019. 1. 28. 보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25590&ref=A>

		<p>*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의 제한 관련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적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안 제11조의6 신설).</p>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019.1.31.	신창현	<p>* 2013년 정부안의 내용 포함하여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금지 등 이해충돌방지 근거를 마련. *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p>
국회법(일부개정) 2019.2.1	박영선	<p>*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임명을 제한.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위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임(안 제58조의3 신설).</p>
국회법(일부개정) 2019.2.1	정동영	<p>*국회 상임위원의 이해충돌 행위 규제, 상임위원 자격 제한, 국정감사 참여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재산상 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등).</p>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9.2.1.	정동영	<p>*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큰 경우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제1항).</p>
공직자의	채이배	<p>*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직과 그로부터 유래하는 사실상의</p>

<p>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 2019. 2. 11.</p>	<p>영향력을 이용하는 행위, 직무의 공정한 수행과 충돌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유지하는 행위를 금지함.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공직자에게 제한되는 행위를 통해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환수함.</p>
---	---

2. 주요 내용

(1) 법률의 형태

-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의 방식, 공직자윤리법으로 통합하는 방식, 특별법으로 이해충돌금지법 제정방식 모두 발의됨.
- 국회관련법에 이해충돌방지관련 규정 포함하기 위해서 국회법 및 국감국조법 개정방법으로도 발의됨.

(2)이해충돌방지제도의 방식과 내용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규정은 크게 나누어 2가지 방식을 활용.
- 하나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제척하는 방식(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 수행 금지), 다른 하나는 모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게 하고, 고위공직자는 이를 공개해 이해충돌의 회피를 유도하는 방식.
- 현재의 방향은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일 경우 제척·회피하도록 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하고,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이나 특정 분야의 경우에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공개해 보충하는 방식.
- 국회의원의 경우 직무 범위가 포괄적인 경우가 많고 직무 제척 후 업무 공백우려. 전문성 위축, 국회의원의 경우 직능대표성을 띤 경우도 많고 관련

분야 전문성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제척보다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등록·공개하는 것이 공직자의 부적절한 직무수행을 견제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 국회의원의 경우 당선 전에 재직한 단체나 직역 등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하고 엄격한 규제가 필요함.

○ 물론 국회의원들은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상시적 감시를 받고 있으나, 정치적 감시 뿐만 아니라 법적 감시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

(3)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와 징계 기능 정상화

○ 스스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제거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현재와 같은 사전예방 공백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될 것임.

○공직자 윤리 전반에 관해서는 반부패총괄기구가 총괄하여 부패방지 기능, 공직윤리 기능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에 관해서는 국회 내에서도 민간이 참여하는 기구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상시 사전심사, 사후 제재(징계)강화해야 함.

(국회공직자윤리위, 14년 만에 주식 이해충돌 징계 기준 신설 YTN2019. 7. 10. 보도, 국회의원 주식 이해충돌 해부... 심사 대상 절반이 규정 위반 YTN 2019. 6. 25. 보도 등)

(4)공개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미공개정보만을 형사처벌하고 공개된 정보의 이용은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협소하여 국회의원의 경우 지득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다른 공직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넓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정도의 법률로는 국민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해 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결과 발생함.

○ ‘업무상 비밀’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진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를 금지해야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공개된 정보라도 업무상 알게 된 것으로서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에는 부당 이득 환수해야 함.

○공직자에게만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및 정보 제공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서 나아가

공직자가 아닌 자도 공직자로부터 수령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입법이 필요함.

V. 결론

○OECD 가이드라인 “이해충돌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문제(Conflict of interest is both straightforward and a complex matter)”⁹⁾

○최근 드러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및 주식 보유 사례는 국회의원들의 문제 의식 부재와 무지를 드러냄.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최근에서야 이해충돌방지제도가 보다 구체화되고 다양화될 필요성 있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특히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 내 법적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국민적 공분.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이미 도입하였고, OECD 또한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2003년에 마련하여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음.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은 다양한 국회의원 발의안처럼 의견다양, 논의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실효성과 타당성 갖춘 제도 만드는 것이 중요함.

참고문헌

전종익,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와 이익충돌, 저스티스, Vol.- No.159,

9) OECD가 회원국에 배포한 「공직사회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2017].

전진영,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의정연구 제25권 제1호(통권56호), 2019.

조재현, 우리나라와 개별 국가의 부패방지조직 및 기구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부패학회보, Vol.21 No.3, 2016.

최계영, 행정부에서의 이익충돌, 저스티스, Vol. No.159, 2017.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입법발의안 평가 및 제안, 2019. 4. 22.

공직자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을 위한 토론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 2019. 3. 12.

OECD GUIDELINES FOR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2003, 2007)